

논문집 편집 및 심사에 관한 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 방향

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결원시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이념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재 관련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 학자 가운데서 인선하되, 학술연구 업적과 연구소 활동 참여도, 전공 등을 고려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가부 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6) 편집자문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학계간으로 활성화시키고, 한국문학연구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자문한다.
- (7) 편집자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 (8) 국내외 편집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이념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학술연구 업적과 연구소 활동 참여도, 전공 등을 고려하되, 특

히 학술연구의 국제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학자 가운데서 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논문집 명칭, 발간시기 및 원고 마감

- (1) 논문집의 명칭은 『한국문학연구』(영문 : HAN GUK MUN HAK YEON GU The Studies in Korean Literature)로 한다.
- (2) 논문집 발간은 연간 3회로,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원고 마감은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편집의 방침

- (1) 본 논문집은 한국문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학술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고를 선별하여 실는다.
- (2) 본 논문집은 학술 연구논문을 주축으로 삼는다.
- (3) 연구논문의 편집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선도할 만한 기획 특집을 연구소 학술회의와 연관하여 적극 추진한다.
- (4) 연구논문 외에 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뜻에서 연구서에 대한 서평과 문화(학) 비평 등을 수록할 수 있다.
- (5) 전문적인 학술 연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할 수 있다.
- (6) 이 외에 학계의 연구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물(학술기행, 강연록 등)을 수록할 수 있다.

라. 논문집의 배부 및 투고료

- (1) 발행 부수는 당해 연도 연구소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 (2) 무가지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국내 대학의 도서관, 국내외 관련 연구소와 학회 및 국내 전공교수에게 배부한다.
- (4) 논문집 게재 논문의 원고료는 해당 논문집 1권과 별쇄본 10부로 한다.
- (5)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교원 기준, 학위과정생 면제) 단, 연구비 수주 논문은 게재료로 3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 (7) 원고분량은 13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지 10매당 1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논문집 심사 규정

가. 심사의 주관

- (1) 논문집의 심사 작업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연구논문(특집 논문 및 일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 심사위원 3인이 게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 학자로 한다.
- (4) 연구논문 이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및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 (6)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5)항에 의거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 편집위원 1인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나. 심사의 기준

1) 연구논문

- (1) 모든 투고는 한국어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 표기 논문의 경우도 소정의 심사를 거친 우수논문의 경우는 번역하여 게재하고 원문은 웹에 수록한다. 단, 외국어표기 논문의 경우 한국어표기 논문의 마감일보다 3개월 일찍 마감한다.
- (2) 투고된 모든 논문은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3) 본 논문집 게재 논문은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
- (4) 본 논문집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 (5) 본 논문집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제나 방법, 결과에 있어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 문제에 대한 논증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것이라야 한다.
 - 본격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체재를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 (6) 본 논문집 투고 논문은 연구소의 원고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 투고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2) 서평 및 기타 원고

- (1)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2) 서평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하여 학계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3) 여타 기획물의 경우 학술적 깊이와 함께 학계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만한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4) 모든 원고는 본 연구소의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 투고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다. 심사의 절차

1) 연구논문

- (1)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에 대하여 전공 학자 가운데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한다.
- (2)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게재가능'(A), '수정후게재'(B), '수정후재심'(C), '게재불가'(D)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3) 3인의 심사의견 중에서 2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판정에 따른다.
- (4) 단, 심사위원 1인이라도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판정한다.
수정후게재: AAD
수정후재심: BBD

계재불가: CCD

- (5) 심사위원의 견해가 엇갈려 위 3, 4항의 규정에 의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판정한다.

수정후계재: ABC, ABD

수정후재심: ACD

계재불가: BCD

- (6) 종합판정에서 '수정후계재'와 '수정후재심'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본과 심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계재 여부를 최종판정한다.
- (7) '계재불가'의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 내용을 해당 세부 전공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다수결에 따라 '수정후계재'와 '계재불가' 가운데 하나로 판정한다.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8)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 보편타당한 정신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 (9) 모든 논문의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심사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2) 서평 및 기타 원고

- (1)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원고에 대하여 유관 분야의 편집위원 2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2) 심사를 맡은 편집위원은 원고를 검토하여 '계재가능', '수정후계재', '수정후재심', '계재불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3) 심사위원 2인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의견에 따르며, 의견이 엇

갈릴 경우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원고의 게재와 수정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4) 모든 원고의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라.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및 조치

1)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 (1)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 (2)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의 검토 결과,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논문집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 (3)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4)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 (5)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 (1)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

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 (3) 질의서를 받은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에는 논문 필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사후 심사 결과의 조치

- (1)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 ① 연구소 홈페이지 및 다음 호 논문집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 ② 논문집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③ 해당 논문 필자의 논문 투고는 향후 최소 5년간 접수하지 아니한다.
- (4) 표절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

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투고 규정

1. 투고 범위와 자격

- (1) 본 논문집에는 한국문학 및 유관 분야에 관한 논문과 서평, 학술 기획물을 실는다.
- (2) 투고 자격은 한국문학 관련 연구자(박사과정 이상)로 한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문학연구를 고양할 수 있는 비 전공자의 원고를 투고 받아 게재할 수 있다.

2. 원고 작성의 원칙

- (1)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한글(hwp)로 작성하여, 본 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dgukoli.jams.or.kr>)에 탑재한다.
- (3) 원고분량은 13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지 10매당 1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서평의 경우 50매 이내, 기타 원고의 경우 100매 이내로 제한한다.
- (4) 투고신청서(성명, 소속, 직급, 주소, 논문 제목 등 기입)를 작성하여, 본 연구소 메일로 제출한다.

3. 원고의 체재

- (1) 원고의 체재는 제목, 필자명, 목차, 본문, 참고문헌의 순서로 한다.
- (2)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목차 다음에 국문초록과 주제어(6개 내외)를, 원고 말미에 영문 제목 및 영문초록과 영문 주제어(6개 내외)

를 각각 첨부한다. 이때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4매 내외, 영문 초록은 6매 내외로 한정한다.

(3) 원고의 필자가 2인 이상의 공동집필일 경우,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4)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기호 체계를 따른다.

① 약호(기호)의 사용은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 각종 단행본, 신문 잡지, 장편소설, 전집 등 : 『 』
- 논문(석사·박사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중·단편 소설, 희곡, 단행본 속 소제목, 독립된 짧은 글 : 「 」
- 연극·영화·텔레비전 드라마 : 〈 〉
-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 원문 인용 : “ ”
- 중략 : (중략)
-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의 음가가 다른 경우 : 예) 서울〔首都〕
-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의 음가가 같은 경우 : 예) 민국(民國)

②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 1) 조동일, 「문학지리학의 새로운 모색」, 『한국문학연구』 제2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4, 161~181쪽.
- 2) 정환국 외,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1, 소명, 2014.
- 3) 조현실, 「무불의 접화와 화해의 서사」,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1(임형택 편), 소명, 2014, 60쪽.
- 4) 위의 책, 420쪽.
- 5) 에릭 홉스봄 외(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6) Charles Taylor, *Hegel*,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③ 참고문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 논문 : 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게재면.
(UCI; DOI)

· 저서 :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예〉

정환국, 「시원(柿園)의 고소설 연구 지평과 고전소설사」, 『한국문학연구』 제53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7, 149~184쪽.(UCI: G704-001857.2017..53.016; DOI: 10.20881/skl.2017..53.006)

김태준 편, 『문학지리 · 한국인의 심상공간』 3, 논형, 2005.

Charles Taylor, *Hegel*,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④ 기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논문의 관행을 따른다.

4. 논문의 저작권 양도에 관한 규정

- (1)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 (2)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 투고로 논문의 저작권을 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 저작권의 사용은 전문 업체에 의한 논문 열람 서비스(유상)와 홈페이지 및 KCI상의 원문 공개 서비스(무상)에 한한다.
- (3) 본 논문집의 발행인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 권리가 있다.

■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한국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전통문화 및 현대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여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및 인류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는 연구소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중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윤리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학술지 『한국문학연구』와 연구소 발간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와 판단,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소장은 당연직 윤리위원이 되며, 나머지 5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4)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 1) 당연직 구성인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를 따른다.
- 2) 선임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종료 때까지로 한다.

제3장 운영

제6조(대상) 본 위원회가 문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위·변조와 표절, 부당한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의 행위이다.

제7조(범위)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위·변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및 연구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왜곡하는 경우.
- 2) 표절: 원저자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사용하거나 일부 변형해 활용한 경우.
- 3) 부당한 중복 게재: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한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혹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공헌한 바가 있는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경우.

- 6) 기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세부 규정 및 동국대학교 연구 윤리 규정을 벗어나는 일체의 경우.

제8조(회의)

- 1)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 2) 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 및 기타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보호)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

-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나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여, 향후 본 연구소의 학술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 피조사자에게는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심사와 집행

제10조(심사의 절차)

- 1)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2)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관정을 확정짓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최한다.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5)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피조사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조사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6) 위원회는 심의 결과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확정되면, 아래 제 11조의 학술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여 연구소장에 즉시 통보하며 소장은 즉각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학술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소의 학술 활동을 제한한다.

- 1) 해당자의 논문 투고 접수 거부(5년 이상. 기한은 윤리위에서 결정함).
- 2) 해당 논문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원문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3) 해당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5장 기타

제12조(기타)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